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도8780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3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노151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

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피해자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 게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이에 관한 실상의 불일치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이라는 이유 등을 각 들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안학교의 영어 교과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교장인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청구할 필요 없는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0조가 정한 '공공의 이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의 잘못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

                          대법관            김재형 \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